특 집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지역개발

1993년 8월 18일/ 중소기업회관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周邊地域開發 政策方向

과학기술처

모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과 산업합리화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 풍요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의 증가 없이는 이러한 풍요롭고 살기좋은 사회건설은 근본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만 1970년대의 에너지파동 이후 전세계는 에너지 공급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우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정부는 1970년대의 불확실한 에너지공급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것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의 국가적 문제를 안고 있어 국민들의 폭 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기물관리시설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나누어 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연료가 있다. 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 종사자가 사용하였던 방호복, 장갑 등과 정비과정에서 생기는 폐기재 및 여과재 등으로, 수분을 함유한 것은 시멘트와 섞어 고화하고 수분이 없는 것은 압축하여 드럼에 넣어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

이 저준위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인간 생활권에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땅 속에 영구처분하여야 한다. 사용후연료는 미래의 자원으로 현재는 발전소 내에 특수설계된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있으나 장차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에 관한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장기간 저장하여야 한다.

외국의 예를 볼 때 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은 수십년간 안전하게 운영되어 왔고 사용후연료 또한 수십년간 안전하게 저장되어 왔다.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확신을 갖고 있다. 다만, 일부 환경론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자체는 완료단계에 있으나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시설,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국가적인 차원의 처분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정규모(약 15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시설의 입지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의 구성은 먼저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취지와 사회혐오시설(본 내용에는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비슷한 성격의 시설인 발전소와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에 대한 국내외의 지원사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지역개발의 기본취지

지역개발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또한 지역고유의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입지에 따른 단순한 반대급부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즉, 지역개발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회복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과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살기좋은 원자력문화권을 형성하는, 동반자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국민들 가운데는 이러한 지역개발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단순한 반대급부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시 해당시설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게 될 그 가족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단지 생계의 수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

재삼 강조하자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은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며 지역주민과 시설에 직접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그리고 가족모두가 함께 잘 살아 가려는 동반자적 성격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 함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시설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장, 화장장, 공해를 유발시키는 공장 등과 같은 시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발전소(수력, 화력, 원자력발전소를 포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일반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에 대해서 국내에 그러한 시설들이 입지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첫째, 발전소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

년 일정규모(약 20억~30억원)를 발전소의 발전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둘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인데 얼마전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지원해 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두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개발 방향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수혜대상자가 지역주민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내용 선정과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상호관심증대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 고취 및 단순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혜택 이외에 주민과의 동질감 형성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동호인 모임조직 같은 정신적인 측면의 협력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개발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추진중에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게된 취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에 따른 토지개발과 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외국의 지원사례

미국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정책기본법(Nuclear Waste Policy Act)에 근거해서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10백만/년~$20백만/년, 사용후연료 저장시설(MRS)은 $5백만/년~$10백만/년 정도를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저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가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해당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전원3법(발전용시설주변지역정비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에 근거해서 공공용시설과 전력요금의 보조, 기업의 유치, 산업근대화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시설운영을 맡고 있는 기관이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증대와 지방세부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방세 납부,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맺는 말

결론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원자력문화권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분야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설치된 지구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시설지구지정→실시계획승인→준공검사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지구의 개발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민 및 관계전문가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시설지구를 지정·고시하며,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토록 한다.

③ 시설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과 국토이용관리법상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변경되고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보상대상자와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률(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한다.

지역지원분야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토록 한다.

②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토록 한다.

③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대상지역은 시설이 위치한 해당지역 시군구로 하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은 시설설치를 위한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④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교육문화 및 복지사업, 생산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이며, 이 중 육영사업은 사업자가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한다.

⑤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인한 이주자 및 생활기반상실자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토록하며,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고용토록 한다.

만들어 나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동시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동시설의 건설과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이 지원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각종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지역문화의 진흥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